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0
----------	------

2020년 3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2.5. 김혜련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2.12.

다. 상정 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3월 5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중계 시 청각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임

위원회 회의 중계 시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 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국수화언어법」,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연간 약 7억 6,500만원)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한국수어¹⁾·폐쇄자막²⁾·화면해설³⁾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됐음.

2 회의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지원(안 제49조의2제3항)

- 현재 의회사무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 제 49조의2⁴⁾에 따라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중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해 인터넷 중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관해서는 회의 규칙상 별도 근거가 없음.
- 다만, 「한국수화언어법」 및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본회의 회의 중계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나머지 위원회 회의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방송 시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의미함(「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

2) “폐쇄자막”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화면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4)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회의규칙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상의 재량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함.

<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u>한한다.</u>)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 <u>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회의규칙상 중계방송 대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로 정하고 있어(제49조의2제1항)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나, 안 제49조의2 제3항은 상임위원회 회의만을 규정해 특별위원회 회의는 제외되는 등 같은 조항 내에서 문구상 불일치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통일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폐쇄자막과는 달리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송출화면의 장면과 자막 등을 음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 중계방송은 동작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적고, 발언의 청취만으로도 회의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화면해설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본회의 회의와는 달리 위원회 회의는 비교적 장시간동안 진행하고 종료시간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동시에 생중계되는 인터넷 중계방송 특성상 복수의 회의에 대해 일시에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등을 지원해야 하므로, 필요인력 수급, 시설 및 장비 구축, 이에 따른 소요예산⁵⁾ 등 제반 여건과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한편, 의회사무처는 의사중계의 경우 동작이 적고 발언의 취지만으로 회의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화면해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어통역사 인력 및 장비 배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내 별도 공간⁶⁾이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공간 확보 등 서비스 기반 환경 마련 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국회 및 타시·도의회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붙임1 참조).

5)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7억 6,500만원 예상

6) 가로 2m X 세로 4m, 8m²

- 참고로, 국회는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활용해 회의를 중계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청 지원수단 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전자는 폐쇄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고 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청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광역의회는 전라북도 의회가 유일하게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회의규칙⁷⁾에서 정하고 있음.

3 개정안의 시행일(부칙)

- 본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장비, 공간 및 예산 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상 제반여건을 검토·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시행일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의회 회의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과 방송접근권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함.
- 다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인력·장비 및 시설, 소요예산 등 제반 여건과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비교형량해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한편, 적용대상

7) 제5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② (생략)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특별위원회 회의 포함, 장애인 시청 지원방안 중 화면해설 제외, 부칙상의 시행일 조정 등 일부 자구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의장에게 그 운영상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 지원 방안을 삭제함(제49조의2제3항).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2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의장에게 그 운영상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 지원 방안을 삭제함(제49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 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u>한한다.</u>)를 그 대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 ----- ----- <u>한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한한다.”를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u>한한다.</u>)를 그 대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 ----- <u>한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u></p>